

1	<p>지급 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토시 생활 응원 급부금(주민세 비과세 세대 대상)의 지급 대상이 아닐 것 • 예기치 못하게 가계가 급변하여 세대 중의 2023년도 주민세 과세자 전원 각자의 1년간 수입 예상액 또는 소득 예상액(※)이 주민세가 비과세가 되는 수준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※대상 기간 중(2023년 1월~10월)의 임의의 1개월 수입에 12를 곱해 얻은 금액(연간 수입 예상액)으로 판정합니다. • 신청 시점에 교토시에 주민표가 있을 것 • 주민세 비과세 세대 또는 가계 급변 세대에 대한 3만 엔의 급부금(※)을 지급하고 있지 않을 것 ※자치체에 따라 급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 <p>지급 금액 1세대당 3만 엔 지급처 신청자(세대주)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 반송 기한 2023년 10월 31일(화) 필착</p>
2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서약 · 동의 사항 -</p> <p>① 교토시 생활 응원 급부금(가계 급변 세대 대상)(이하 ‘급부금(가계 급변 세대 대상)’의 지급 요건(※)에 해당합니다. ※급부금(가계 급변 세대 대상)의 지급 대상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대 중의 2023년도 주민세가 과세된 사람 전원이 예기치 못하게 주민세 비과세 수준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수입(소득)이 감소했습니다. • 주민세 비과세 세대 또는 가계 급변 세대에 대한 3만 엔의 급부금(※)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. ※자치체에 따라 급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 • 급부금(가계 급변 세대 대상)의 지급 요건 해당성 등의 심사 등을 위해 교토시는 전 주소지에서의 급부금 지급 유무를 비롯하여 필요한 주민 기본 대장 정보나 세금 정보 등과 같은 공부 등의 확인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다른 행정기관 등에 요청 및 제공합니다. <p>② 공부 등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관계 서류를 제출합니다.</p> <p>③ 이 신청서는 교토시가 지급 결정을 내린 후에는 급부금(가계 급변 세대 대상) 청구서로서 취급됩니다.</p> <p>④ 교토시가 지급 결정을 내린 후 신청서(청구서)의 미비에 의한 이체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면서 2023년 10월 31일까지 미비가 보정되지 않는 경우는 급부금(가계 급변 세대 대상)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</p> <p>⑤ 급부금(가계 급변 세대 대상)의 지급 후 이 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대해 허위가 판명된 경우나 급부금(가계 급변 세대 대상)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판명된 경우는 급부금(가계 급변 세대 대상)을 반환합니다.</p> <p>⑥ 이 급부금은 예기치 못하게 수입이 감소된 세대에 지급하는 것으로, 예를 들어 사업 활동에 계절성이 있는 경우에 번망기나 농산물 출하 시기 등 통상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시기 이외를 대상 월로 지정하여 급부 신청한 경우 등 예기치 못하게 수입이 감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급 신청하는 것은 부정 행위에 해당합니다. 부정 지급한 사람은 사기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/p>
3	<p>제출 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☑ ‘교토시 생활 응원 급부금(가계 급변 세대 대상) 신청서(청구서)’(본서) ☑ ‘신청자 · 청구자 본인 확인 서류(사본)’ ※신청자 · 청구자의 운전면허증, 건강보험증, 마이넘버카드(앞면), 연금수첩, 개호보험증, 여권 등 중 1개의 사본을 첨부하세요. ☑ ‘주민표 사본(세대 전원분)’(2주 이내에 발행된 것) ☑ ‘호적 부표 사본’(2023년 1월 1일 이후 여러 번 전거한 사람) ☑ ‘수취 계좌 확인 서류(사본)’ ※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 급부금 수취 계좌의 금융기관명, 계좌번호, 계좌 명의인을 확인할 수 있는

	<p>부분(사본)을 첨부하세요.</p> 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‘간이 수입(소득) 예상액 신청서’(별지)</p> 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‘2023년 1월~10월 사이의 ‘임의의 1개월 수입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본)’ ※신청하는 수입과 관련된 급여 명세서, 연금 이체 통지서 등 수입액을 알 수 있는 서류, 사업 수입액 이나 부동산 수입액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세요. 소득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경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세요.</p>
4	<p>서명이나 첨부 서류가 누락되지는 않았습니까? (<u>서명이나 첨부 서류의 누락이 있으면 급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.</u>)</p> <p>위의 서약·동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약·동의합니다. 또한 이 신청서 및 별지 신청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.</p>
5	세대주를 신청자로 하세요.
6	신청자가 속한 세대원 전원을 기입하세요.
7	2023년 1월~10월 사이에 주민세 비과세 상당까지 가계가 급변한 사람에 ○를 표시하세요.
8	현주소와 2023년 1월 1일 시점의 주소가 상이한 사람은 1월 1일 시점의 주소를 기입하세요.
9	서명하세요.